

# 퇴직연금 전환 및 중도인출 시행 관련 Q&A

## Q1.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 에서만 가능한가요?

A.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적용을 받는 **확정기여형(DC)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DB)은 확정기여형(DC) 으로 전환 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Q2. 현재 확정기여형(DC) 이면 중도인출 신청을 어디로 하나요?

A. 현재 확정기여형(DC)인 경우는 해당 [DC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로 별도 신청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인감 날인 등 절차상 필요한 업무는 DC 사업자와 회사 담당부서가 직접 처리합니다.

## Q3. 중도인출은 누구나 신청 가능 한가요?

A.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다음 6가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임차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 ③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④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 ⑤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⑥ 그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Q4.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 서류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정기 : 매년 1, 7월 경)을 한 후에 중도인출 사유가 될

경우 금융기관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정급여형(DB)이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은 매년 4, 10월 경에 공지하는 일정에 맞추어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기관 지점을 직접 내방하시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KT 시스템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퇴직연금 금융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는 “중도인출 안내문” 참조)

- B. 금융기관에 중도인출을 신청할 때는 크게 **공통서류와 증빙서류 일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는 퇴직연금제 전환신청서와 중도인출 신청서이며, 신청할 때 **금융기관에서 양식을 준비 하여 작성**을 도와 드립니다. 증빙서류는 인출 사유별로 다르며, 필수로 제출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사유	증빙 서류	발급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민원24)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 ▪ 매입 주택의 등기부등본	주민센터, 구청, 온라인(민원24)
	▪ 무주택서약서	가입 금융기관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무주택자의 전세,임차보증금 부담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민원24)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센터, 구청, 온라인(민원24)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병원
	▪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구청 온라인(민원24)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 법원결정문 또는 확정증명원 (최근5년 이내)	법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파산선고문(최근5년 이내)	법원

※ 주택매매계약서와 분양계약서는 사본 제출, 기타서류는 원본 제출

- C. 증빙서류는 중도인출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발급 또는 작성분만 인정**이 됩니다.
- D. 주택구입의 경우는 중도인출 신청 접수시점에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즉, 등기가 완료된 이후 중도인출을 신청하시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E. 장기 요양의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반드시 **'향후 6개월 이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Q5. 중도 인출시 직원이 직접 인감 날인을 본사에서 받아서 제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타사의 경우, 해당 직원이 직접 회사의 날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있으나 kt의 경우에는 직원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금융기관에서 일괄 접수하여 kt본사로 날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중도인출관련 날인을 본사로 요청하실 필요는 없으며 금융기관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만 제출하시면 모든 신청이 마무리**되며, 중도인출 적격/부적격 여부는 개별 이메일로 공지 드립니다.

**Q6. 주택구입이나 분양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주택을 신축해도 자격이 되나요?**

- A. 네, 주택 신축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서류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① 무주택서약서
  - ②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③ 주민등록등본
  - ④ 세목별 과세증명서
  - ⑤ 신축 주택 설계서
  - ⑥ 공사계약서(단, 신출 건물의 용도가 "거주용 주택"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Q7.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부분만 인출도 가능하나요?

A. 상반기에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자와 중도인출 신청자는 전년도말까지 적립된 퇴직금 총액이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 되며, 하반기에 DC형 전환 또는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는 당해년도 6월말 기준의 퇴직금 총액이 DC형으로 전환됩니다. 매월 적립되는 퇴직금은 대략 계산된 금액을 전산(ERP>HR>개인업무>급여>급여>퇴직금>예상액 조회)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만, 기준일 당시의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 이체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규정 제33조(평균임금)>**

1. 퇴직 전 3개월 기준연봉월정액,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가산금, 휴일근무가산금 포함)의 3등분액
2. 퇴직 전 1년분의 성과급, 연차휴가수당의 12등분액

**<DC 계좌로 이체되는 금액>**  
 단, 상반기 DC전환자는 전년도 12월말, 하반기 DC 전환자는 당년도 6월말 기준 퇴직총당금 이체

법정계산일	기준년월	중도정산일	산정기간	평균임금	지급률	퇴직총당금
1994-04-12	2016/08	1999-06-30	17년 062 일	5,817,130	17.17	99,873,300

퇴직금(2016.08월말 기준)

법정회사지급분	법정퇴직연금내역	퇴직금총액(IRP 이전금액)
20,642,209	79,237,091	99,879,300

※ 법정 퇴직연금 금액이 있는 분들은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실제 퇴직시 퇴직금총액이 IRP계좌로 전액이관되므로 회사대부금은 별도로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소득세, 주민세도 IRP계좌에서 수령하실때 공제됩니다.

B. 중도인출 최종수령액은 DC 전환된 금액(퇴직총당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 징수한 금액이므로, ERP 시스템에서 확인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 Q8. 주택구입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할 때, 무주택 기간이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A.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만 무주택자이면 가능하며, 무주택 기간은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9.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부 사원의 경우도 각각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Q10.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인출이 불가능한가요?**

A.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 등기가 완료되어 있으면 유주택자의 지위에 해당하므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Q11. 장기요양 사유로 인출신청을 할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에 정하고 있는 범위를 같이 적용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생계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동거여부 불문	-
기타 부양 가족	직계비속·입양자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
위탁아동	별거도 동거가족으로 봄)	만 18세 미만

※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B. 부양가족에 장인, 장모 모두 포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증빙필수)

**Q12. 장기요양의 경우,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에 꼭 “향후 6개월 이상”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야 하나요? 내용에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네,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신청 시점 한 달 이내의 작성분** 이어야 하며, “향후 6개월 이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금융기관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중도인출을 할 경우는 금융감독원의 감사 지적 대상이 되어 금융기관에서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B. 최근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6개월 이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있더라도 그 내용이 실질적인 요양이나 치료가 아닌 “추적 관찰” 등으로 표현되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13.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는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개인신용회복 절차 진행중인 경우는 중도인출이 불가한가요?**

- A. 불가합니다.

**Q14. 중도인출 이후에 사유가 된다면 다시 인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네, 인출 이후에 다시 인출 신청하는 시점에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지위가 유지된다면 중복해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분양 받아 계약금을 납부할 때 중도인출을 하고, 잔금 납부시까지 다시 적립된 퇴직금을 인출을 신청할 경우 무주택자 지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의 경우도 요양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어 다시 인출을 해야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중도 인출시와 동일하게 공통서류와 해당 증빙서류 일체는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인출 사유 중 전세 및 임차보증금은 재직 중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Q15. 이번 중도인출 이후에 향후에도 신청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 A. 매년 4월, 10월에 법정 중도인출 사유자에 한해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DC형 또는 혼합형으로 전환(1, 7월 시행)한 분들은 법정 중도인출 사유가 되면 회사 시행과 무관하게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체적인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 시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16. 중도인출 신청 시점부터 인출 가능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뭔가요?**

- A. 중도인출 신청 접수부터 인출 가능일까지는 약 1개월 소요되는데, 프로세스별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다음과 같습니다.(영업일 기준)
- ② 금융기관에서 접수 기간 : 10일
  - ② 금융기관별 최종 접수 명단 확정 후 KT 통보 및 대상 제외자 확인 : 3일
  - ③ 개인별 퇴직급여 산정 및 금융기관별 DC전환 금액 확정 : 10일
  - ④ 자금운용팀 금융기관별 DC 전환 금액 준비 : 5일
  - ⑤ DC전환일 이후 중도인출 신청시 상품 해지 및 계좌이체 : 3~5일  
(금융기관별로 상이함)

**Q17. 중도인출 이후 금융기관 변경이 가능한가요?**

- A. 중도인출 또는 DC형, 혼합형 전환 후에 금융기관 변경을 원할 경우는 DC 전환 시행시(매년 1, 7월)에 금융기관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변경 전 가입한 상품의 해지에 따른 불이익(약정이자율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18. 중도인출을 한 후에 확정급여형(DB)으로 다시 변경할 수 없나요?**

- A. DC형으로 전환 후 확정급여형(DB)으로 다시 환원 할 수 없습니다.

**Q19.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이 뭔가요?**

- A. 퇴직연금제도는 근무기간 중 일정금액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는 금융기관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산정된 금액의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B. 우리회사는 2011년 4월까지 퇴직금제도로 운용한 후에 2011.4.29일부터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을 먼저 도입하였으며, 2012.12월에 확정기여형(DC)을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 DB(Defined Benefit), DC(Defined Contribution)

#### Q20.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형)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A.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급여의 산정방식입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금제도와 같은 산정방식을 적용하며 퇴직금수령액은 평균임금과 근속년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매년 적립된 퇴직금을 금융기관으로 납입하고, 근로자 본인의 운용에 따른 운용수익(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금수령액이 결정됩니다.
- B. 확정급여형(DB)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확정기여형(DC)과 혼합형 가입자만 DC 이전 금액에 한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C.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과 혼합형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은 가능하나, 확정기여형(DC)에서 확정급여형(DB)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